

제439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7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일시 : 2019년 12월 24일(화) 15:00 ~ 17:30 (회의소집 통보일 : 2019년 12월 13일)
2. 장소 : 본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구분	인 원	성 명	비 고
참석	이사 7명	박언표, 강신혁, 김명혁, 서의택, 안진환, 윤성복, 하선규	
임원	감사 2명	정 일, 황성철	
불참	이사 0명		
임원	감사 0명		

4. 안건

가. 교원임용의 건

- 신라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신라대학교 교육전담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신라대학교 연구전담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신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나. 규정 개정의 건

-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연봉제 적용 전임교원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조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다.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 신라대학교 2019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신라중학교 2019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동래구노인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동래구노인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박 언표	김 명혁	안 진 환
------	------	-------

- 법인(수익사업 포함) 2019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법인(수익사업 포함) 2020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라. 보통재산 폐기의 건

- 신라대학교 유형고정자산(도서) 폐기에 관한 사항

마. 임원 선임의 건

- 이사(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바. 도시계획시설(학교 : 신라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건

- 신라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 신라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사.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부설기관 소장 임용의 건

-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임용에 관한 사항

아.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자. 동래구노인복지관사회서비스센터 폐업의 건

- 동래구노인복지관사회서비스센터(노인돌봄종합서비스) 폐업에 관한 사항

차. 기타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청탁금지법교육

5. 회의내용

의장은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재직이사 7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제439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전차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접수하다.

가. 교원임용의 건

- 신라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신라대학교 교육전담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신라대학교 연구전담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신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의장은 교원 임용의 건 중 신라대학교 전임교원, 교육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신라대학교 교학부총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신라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한 내용 중 아래 교원이 조건부로 재임용 제청된 사항을 설명하고 재임용 제청된 교원 모두 기한 내에 아래의 '조건부 재임용 조건'으로 명시된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취소한다는 사항도 함께 설명하다.

박 연필	김 명 혁	이 진 환
------	-------	-------

• 전임교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재임용 필요 연구실적(%)	조건부 재임용 조건	비고
1	국제관광 경영학부	조교수	김정은	50	· 게재예정인 연구실적 1편(50%)이 현 임용기간 만료일 (2020.02.29)까지 최종 출간되어 별쇄본이 제출되는 조건 ·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완료	

• 교육전담교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재임용 필요 연구실적(%)	조건부 재임용 조건	비고
1	무역경제학부 경제금융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정용석	200	· 심사 중인 연구실적 2편(200%)이 2019년12월31까지 게재 예정증명서가 제출되고, 현 임용기간 만료일(2020.02.29.)까 지 최종 출간되어 별쇄본이 제출되는 조건 (심사 중)	
2	생명과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김동균	50	· 게재예정인 연구실적 1편(100%)이 현 임용기간 만료일 (2020.02.29)까지 최종 출간되어 별쇄본이 제출되는 조건 ·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완료(1편, 100%)	
3	유아교육과	조교수 (교육전담)	박성혜	100	· 게재예정인 연구실적 1편(100%)이 현 임용기간 만료일 (2020.02.29)까지 최종 출간되어 별쇄본이 제출되는 조건 ·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완료(1편, 100%)	
4	컴퓨터 교육과	조교수 (교육전담)	김태웅	200	· 게재예정인 연구실적 1편(100%)이 현 임용기간 만료일 (2020.02.29)까지 최종 출간되어 별쇄본이 제출되고, · 심사 중인 연구실적 1편(100%)이 2019년12월31까지 게재 예 정증명서가 제출되고 현 임용기간 만료일(2020.02.29.)까 지 최종 출간되어 별쇄본이 제출되는 조건 (심사 중) ·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완료(1편, 100%)	
5	상담치료 대학원	조교수 (교육전담)	이은주	60	· 게재예정인 연구실적 1편(100%)이 현 임용기간 만료일 (2020.02.29)까지 최종 출간되어 별쇄본이 제출되는 조건 ·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완료(1편, 100%)	

• 산학협력중점교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재임용 필요 연구실적(%)	조건부 재임용 조건	비고
1	컴퓨터소프트 웨어공학부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강상희	310점 이상	· 재임용 평가 핵심항목인“산학협력 교육활동 영역”의 2019년“학생 취업지도” 실적을 310점 이상 취득 (해당 학생의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업 유지 실적) · 2020년 1월 31일까지 취창업지원팀에서 최종 확인된 실적만 인정	
2	인재개발처	부교수 (산학협력중점)	윤명홍	199점 이상	· 재임용 평가 핵심항목인“산학협력 교육활동 영역”의 2019년“학생 취업지도” 실적을 199점 이상 취득 (해당 학생의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업 유지 실적) · 2020년 1월 31일까지 취창업지원팀에서 최종 확인된 실적만 인정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 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조건부 재임용을 포함한 신라대학교 전임교원, 교육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첨 1】 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백 연 표	김 명 혁	안 진 환
-------	-------	-------

나. 규정 개정의 건

-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연봉제 적용 전임교원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조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의장은 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기획부총장은 제시된 관련 자료를 근거로 보수규정 및 연봉제 적용 전임교원 보수규정, 조교보수 규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규정 개정의 건인 보수규정 및 연봉제 적용 전임교원 보수규정, 조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별첨 2】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다.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 신라대학교 2019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신라대학교 기획부총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과 대학평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 법인 이사회에 상정된 신라대학교 2019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신라대학교 2019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입의 부에서 등록금수입 63,016,943천원, 전입 및 기부수입 28,341,601천원, 교육부대수입 4,443,963천원, 교육외수입 516,576천원, 투자와기타자산수입 1,084,007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8천원, 고정부채입금 2,037,002천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597,594천원, 지출의 부에서 2019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중 부족분에 대한 교비회계 부담금 2,001,316천원을 포함한 보수 41,534,859천원, 관리운영비 11,787,588천원, 연구·학생경비 38,002,855천원, 교육외비용 513,426천원, 예비비 500,000천원,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027,732천원, 고정자산매입지출 7,201,334천원, 유동부채상환 2,804,000천원, 고정부채상환 665,900천원으로 수입·지출 합계 각각 104,037,694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신라중학교 2019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신라중학교 2019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신라중학교 교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신라중학교 2019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박영환	김영혁	민지현
-----	-----	-----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신라중학교 2019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의 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000천원,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4,672,243천원, 기타이전수입 16,900천원, 학부모부담수입 407,972천원, 행정활동수입 41,839천원, 전년도이월금 37,240천원, 세출의 부에서 인적자원운용 2,347,436천원,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751,765천원, 기본적교육활동 221,029천원, 선택적 교육활동 40,760천원, 교육활동지원 179,194천원, 학교 일반운영 249,199천원, 학교시설 확충 1,377,902천원, 학교 재무활동 18,909천원으로 세입·세출 합계 각각 5,186,194천원정도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직종합사회복지관장은 미리 배부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첨 3】 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직종합사회복지관장은 미리 배부한 2020년도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0년도 예산은 【별첨 4】 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동래구노인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동래구노인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동래구노인복지관 부장은 미리 배부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동래구노인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은 【별첨 5】 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박인표	김영혁	이진환
-----	-----	-----

● 동래구노인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동래구노인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동래구노인복지관 부장은 미리 배부한 2020년도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동래구노인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0년도 예산은 【별첨 6】 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소장은 미리 배부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은 【별첨 7】 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소장은 미리 배부한 2020년도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20년도 예산은 【별첨 8】 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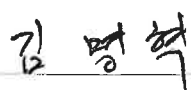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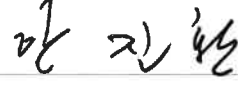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부장은 미리 배부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첨 9】 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	---

•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부장은 미리 배부한 2020년도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20년도 예산은 【별첨 10】 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배부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다. 더불어,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2월 29일자로 수탁이 종료됨을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첨 11】 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법인(수익사업 포함) 2019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으로 먼저 법인(수익사업 포함) 2019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법인(수익사업 포함) 2019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법인 2019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은 수입의 부에서 전입및기부수입 520,080천원, 교육외수입 32,705천원, 고정부채입금 1천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4,939천원, 지출의 부에서 보수 75,360천원, 관리운영비 85,362천원, 교육외비용 7,300천원, 전출금 420,672천원,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1천원, 고정자산매입지출 5천원, 고정부채상환 1천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 9,024천원으로 수입·지출 합계 각각 597,725천원정도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법인수익사업 2019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은 수입의 부에서 교육외수입 79,202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천원, 고정부채입금 1천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 528,317천원, 지출의 부에서 관리운영비 23,602천원, 교육외비용 2천원, 전출금 220,000천원,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천원, 고정자산매입지출 3천원, 고정부채상환 1천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 363,912천원으로 수입·지출 합계 각각 607,521천원정도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백영환	김명혁	이진호
-----	-----	-----

• 법인(수익사업 포함) 2020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법인(수익사업 포함) 2020학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법인(수익사업 포함) 2020학년도 예산(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법인 2020학년도 예산은 수입의 부에서 전입및기부수입 500,000천원, 교육외수입 21천원, 고정부채입금 1천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 9,024천원, 지출의 부에서 보수 75,600천원, 관리운영비 65,163천원, 교육외비용 7,300천원, 전출금 310,500천원,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천원, 고정자산매입지출 5천원, 유동부채상환 45,000천원, 고정부채상환 1천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 5,476천원으로 수입·지출 합계 각각 509,046천원정도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법인수익사업 2020학년도 예산은 수입의 부에서 교육외수입 69,152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천원, 고정부채입금 1천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63,912천원, 지출의 부에서 관리운영비 23,602천원, 교육외비용 2천원, 전출금 200,000천원,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천원, 고정자산매입지출 3천원, 고정부채상환 1천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09,457천원으로 수입·지출 합계 각각 433,066천원정도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보통재산 폐기의 건

• 신라대학교 유형고정자산(도서) 폐기에 관한 사항

의장은 보통재산 폐기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신라대학교 유형고정자산(도서)중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 34조(감가상각) 및 도서관규정 제31조(제적대상)에 의거 5년이 경과한 도서 중 자료의 가치를 상실한 도서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폐기하고자 함을 자세하게 설명하다.

의장은 상정 안전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보통재산 폐기의 건인 신라대학교 유형고정자산(도서) 폐기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선언하다.

○ 도서 : 금106,453,855원(금일억육백사십오만삼천팔백오십오원)

구 분	종 수	권 수	구독금액(원)	비 고
국내 정기간행물	640	9,025	66,796,640	2010-2014학년도 구입분
해외 정기간행물	14	205	1,527,535	
수험서	1,431	1,451	25,418,450	
교육법전	5	81	7,792,000	
관보 및 법령집추록	2	66	4,919,230	
계	2,092	10,828	106,453,855	

백인표 김명혁 이진환

마. 임원 선임의 건

• 이사(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의장은 임원 선임의 건으로 이사(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2019년 11월 20일 최재훈 개방이사(교육경험이사)의 별세로 인하여 후임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함과 사립학교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및 정관 제24조의3에 의거, 2019년 12월 16일 개최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후임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가 2배수 추천된 내용을 관련 자료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에 대해 설명하고 개방이사로 선임 시 임기는 본 법인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임을 설명하다.

의장은 개방이사 신규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안진환 이사가 추천된 대상자 중 장재경 前 신라중학교 교장도 교육 분야에서 평생을 헌신하신 훌륭한 분이지만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2006년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수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산대학교 BK21+사업 단장,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원장,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학과장, 부산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수행책임자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 자문위원 및 부산광역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시 중인 우리 법인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분이라 사려되어 개방이사 및 교육경험이사로 신규 선임할 것을 제의하다.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7명이 안진환 이사의 제의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2019년 11월 20일 별세하신 최재훈 개방이사(교육경험이사) 후임으로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 동안 본 법인의 개방이사 및 교육경험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교육부에 임원 취임 승인 신청 등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임을 말하다.

바. 도시계획시설(학교 : 신라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건

• 신라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 신라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의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신라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19-60호(2019.7.3)로 고시된 신라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한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간연장 및 사업규모 변경과 관련하여 사상구청과 협의 중인 내용을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사상구청에서 인가하는 사업기간까지 신라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도시계획시설(학교:신라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안인 기간연장 및 사업규모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향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인가할 기간연장 조건 이행을 위하여 이행 보증보험증서 보증기간을 사업인가 기간에 6개월 초과하여 보험료 납부 등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하다.

백 연 주	김 명 혁	안 진 환
-------	-------	-------

사.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부설기관 소장 임용의 건

-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임용에 관한 사항

의장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부설기관 소장 임용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문명순 소장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임용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 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부설기관 소장 임용의 건은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각 기관의 소장 변경 신청 등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임을 말하다.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부설기관 소장 임용 사항

직명	면			임		비고
	성명	면직일자	사유	성명	임용일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소장	문명순	2019.12.31	정년퇴직	이조경	2020.01.01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소장	이조경	2019.12.31	전보	이혜영	2020.01.01	
청소년성문화센터소장	이혜영	2019.12.31	전보	정주비	2020.01.01	승진

아.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의장은 정관 변경의 건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 제시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정관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정관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 12】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정관 변경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임을 말하다.

박영환 김명혁 안진호

자. 동래구노인복지관사회서비스센터 폐업의 건

- 동래구노인복지관사회서비스센터(노인돌봄종합서비스) 폐업에 관한 사항

의장은 동래구노인복지관사회서비스센터 폐업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 미리 배부한 자료를 근거로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시행으로 동래구노인복지관 부설 사회서비스센터(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동래구청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폐업처리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207번길 18에 소재하고 있는 동래구노인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폐업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다. 의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참석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없이 찬성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동래구노인복지관사회서비스센터(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폐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폐지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임을 말하다.

차. 기타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청탁금지법교육

의장은 기타사항으로 청탁금지법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청탁금지법 및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다.

의장은 기타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묻고,

참석이사 상호간에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6. 간서명 임원선임

의장은 금일 이사회 참석임원을 대표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 할 임원으로 3인을 추천 요청하고, 강신혁 이사가 박언표 이사장, 김명혁 이사, 안진환 이사 3인을 추천하다. 이사정수 8명 중 참석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박언표 이사장, 김명혁 이사, 안진환 이사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언하다.

7. 폐회선언

안건 처리가 다 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학교법인 박영학원 이사장 박언표

(서명)

이 사 서의택

(서명)

박 언 표	김 명 혁	안 진 환
-------	-------	-------

이 사 강신혁 (서명) 강신혁

이 사 김명혁 (서명) 김명혁

이 사 안진환 (서명) 안진환

이 사 윤성복 (서명) 윤성복

이 사 하선규 (서명) 하선규

감 사 정 일 (서명) 정일

감 사 황성철 (서명) 황성철

백인환	김명혁	안진환
-----	-----	-----

【 별첨 1 】

1. 신라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가. 재임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현임용 기간	임 용 사 항			비고
					소 속	직 급	임용기간	
1	문예창작비평학과	부교수	유철상	2013.10.01. ~2020.02.29	문예창작비평학과	부교수	2020.03.01. ~2026.02.28.	
2	공공인재학부 법학전공	부교수	이주일	2013.10.01. ~2020.02.29	공공인재학부 법학전공	부교수	2020.03.01. ~2026.02.28.	
3	국제지역학부 중어중국어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조교수	오기도	2017.03.01. ~2020.02.29	국제지역학부 중어중국어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조교수	2020.03.01. ~2023.02.28	
4	국제관광경영학부	조교수	김정은	2017.03.01. ~2020.02.29	국제관광경영학부	조교수	2020.03.01. ~2023.02.28	조건부 재임용
5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김정호	2017.03.01. ~2020.02.29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2020.03.01. ~2023.02.28	
6	영어교육과	조교수	정현경	2017.03.01. ~2020.02.29	영어교육과	조교수	2020.03.01. ~2023.02.28	
7	역사교육과	조교수	김정식	2017.03.01. ~2020.02.29	역사교육과	조교수	2020.03.01. ~2023.02.28	
8	수학교육과	조교수	김연	2017.03.01. ~2020.02.29	수학교육과	조교수	2020.03.01. ~2023.02.28	

2. 신라대학교 교육전담교원 임용 가. 재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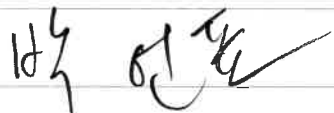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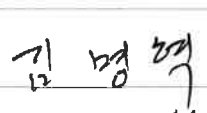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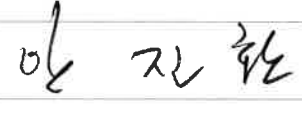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최초 임용일	임 용 사 항			비고
					소 속	직 급	임용기간	
1	공공인재학부 법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권순현	2014.03.01	공공인재학부 법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2	무역경제학부 무역물류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이홍숙	2008.03.01	무역경제학부 무역물류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3	무역경제학부 경제금융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정용석	2006.03.01	무역경제학부 경제금융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조건부 재임용
4	국제지역학부 중어중국어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조서정	2016.03.01	국제지역학부 중어중국어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5	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아영아	2014.03.01	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6	물리치료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송주민	2014.03.01	물리치료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7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김현숙	2008.03.01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8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오상희	2010.03.01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9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김성재	2014.03.01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10	스마트 전기전자공학부	조교수 (교육전담)	장은영	2014.03.01	스마트 전기전자공학부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11	생명과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김동균	2010.03.01	생명과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조건부 재임용

박영환 김명혁 안지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최초 임용일	임 용 사 항			비고
					소 속	직 급	임용기간	
12	융합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권정일	2006.03.01	융합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13	창업예술학부 주얼리디자인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이다혜	2014.03.01	창업예술학부 주얼리디자인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14	창업예술학부 조형미술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도대근	2006.03.01	창업예술학부 조형미술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15	창업예술학부 조형미술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최중섭	2014.03.01	창업예술학부 조형미술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16	교육학과, 교수학습개발센터	조교수 (교육전담)	강정찬	2014.03.01	교육학과, 교수학습개발센터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17	유아교육과	조교수 (교육전담)	박성혜	2010.03.01	유아교육과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조건부 재임용
18	영어교육과	조교수 (교육전담)	한혜정	2014.03.01	영어교육과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19	컴퓨터교육과	조교수 (교육전담)	김태웅	2014.03.01	컴퓨터교육과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조건부 재임용
20	창조공연예술학부 음악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정년경	2014.03.01	창조공연예술학부 음악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21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권미분	2006.03.01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22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심진호	2006.03.01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23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이은아	2006.03.01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24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이병철	2006.03.01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25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박수정	2008.03.01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26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신은경	2012.03.01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27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타세이 아담 마샬	2012.03.01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28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황지혜	2014.03.01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29	상담치료대학원	조교수 (교육전담)	이은주	2014.03.01	상담치료대학원	조교수 (교육전담)	2020.03.01. ~2022.02.28	조건부 재임용

나. 면직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최초임용일	임 용 사 항			비고
					구 분	면직사유	면직일자	
1	공공인재학부 법학전공	조교수 (교육전담)	진상욱	2010.03.01	면직	임기만료 (재임용 미신청)	2020.02.29	정년퇴직
2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학과	조교수 (교육전담)	윤채영	2016.03.01	면직	임기만료 (재임용 미신청)	2020.02.29	포기원제출
3	교육대학원, 학생상담센터	조교수 (교육전담)	신경일	2017.04.01	면직	임기만료 (재임용 미신청)	2020.02.29	정년퇴직
4	교양과정대학	조교수 (교육전담)	조정순	2012.03.01	면직	임기만료 (재임용 요건 미충족, 재임용 미신청)	2020.02.29	정계(건책)

3. 신라대학교 연구전담교원 임용

가. 재임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최초 임용일	임 용 사 항			비고
					소 속	직 급	임용기간	
1	바이오산업학부 제약공학전공	조교수 (연구전담)	안미영	2016.03.01	바이오산업학부 제약공학전공	조교수 (연구전담)	2020.03.01. ~2022.02.28	
2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전공	부교수 (연구전담)	최재석	2014.03.01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전공	부교수 (연구전담)	2020.03.01. ~2022.02.28	
3	생명과학과	조교수 (연구전담)	최은영	2014.03.01	생명과학과	조교수 (연구전담)	2020.03.01. ~2022.02.28	
4	식품영양학과	조교수 (연구전담)	박미화	2014.03.01	식품영양학과	조교수 (연구전담)	2020.03.01. ~2022.02.28	

나. 면직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최초임용일	임 용 사 항			비고
					구 분	면직사유	면직일자	
1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전공	조교수 (연구전담)	송민정	2016.03.01	면직	임기만료 (재임용 미신청)	2020.02.29	포기원 제출
2	일반대학원	조교수 (연구전담)	최현목	2017.09.01	면직	임기만료 (재임용 미신청)	2020.02.29	포기원 제출

4. 신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가. 재임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최초 임용일	임 용 사 항			비고
					소 속	직 급	임용기간	
1	컴퓨터소프트 웨어공학부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강상희	2016.03.01	컴퓨터소프트 웨어공학부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2020.03.01. ~2022.02.28	조건부 재임용
2	융합기계공학부, 산학협력단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최년식	2013.12.19	융합기계공학부, 산학 협력단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2020.03.01. ~2022.02.28	
3	에너지화학공학부에 너지응용화학전공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김용홍	2016.03.01	에너지화학공학부 에너지응용화학전공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2020.03.01. ~2022.02.28	
4	교양과정대학, 산학협력단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강세현	2014.03.01	교양과정대학, 산학협력단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2020.03.01. ~2022.02.28	
5	산학협력학부	부교수 (산학협력중점)	김성근	2012.03.01	산학협력학부	부교수 (산학협력중점)	2020.03.01. ~2022.02.28	
6	인재개발처	부교수 (산학협력중점)	윤명홍	2016.03.01	인재개발처	부교수 (산학협력중점)	2020.03.01. ~2022.02.28	조건부 재임용
7	IPP일학습 병행제사업단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장희정	2016.04.11	IPP일학습 병행제사업단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2020.03.01. ~2021.02.28	2021.2.28. 사업종료
8	대학일자리센터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최경화	2016.04.11	대학일자리센터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2020.03.01. ~2021.02.28	2021.2.28. 사업종료

나. 면직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최초임용일	임 용 사 항			비 고
					구 분	면직사유	면직일자	
1	무역경제학부 경제금융학전공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박용한	2013.12.19	면직	임기만료 (재임용 미신청)	2020.02.29	포기원 제출
2	무역경제학부 무역물류학전공	조교수 (산학협력중점)	장성열	2013.12.19	면직	임기만료 (재임용 미신청)	2020.02.29	포기원 제출

박용한
김명혁
안진환

【 별첨 2 】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원, 일반기술기능· <u>고용직원</u>)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원(2008년 2월 29일 이전에 임용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 <u>교원</u> ”이라 한다), 일반기술기능직원)에게 적용한다.	○ 고용직 삭제, 용어 정의
제5조(봉급의 지급) 교원에게는 별표1(교원 봉급표), 일반기술직원에게는 별표2(일반기술직원 봉급표), 기능직원에게는 별표3(기능직원 봉급표), <u>고용직원에게는 별표3의 2(고용직원 봉급표)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봉급을 지급한다.</u> <신 설> <신 설>	제5조(봉급의 지급) ① 교원에게는 별표1(교원 봉급표), 일반기술직원에게는 별표2(일반기술직원 봉급표), 기능직원에게는 별표3(기능직원 봉급표)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봉급을 지급한다. ② <u>정직 처분을 받은 자의 봉급은 전액을 감하고, 감봉은 3분의 1을 감하되 세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u> ③ <u>직위해제 및 휴직한 교직원에게는 그 사유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u>	○ 고용직 삭제 (봉급표) ○ 징계, 직위해제, 휴직에 대한 봉급의 감액근거 명시
제6조(정액수당) 일반기술직원의 월 정액수당은 별표4, 기능직원의 월 정액수당은 별표5, <u>고용직원의 월 정액수당은 별표5의 2과 같다.</u> <신 설>	제6조(정액수당) ① 일반기술직원의 월 정액수당은 별표4, 기능직원의 월 정액수당은 별표5와 같다. ② <u>징계,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10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u>	○ 고용직 삭제 (정액수당) ○ 정액수당에 대한 감액근거 명시
제7조(부가수당)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6에 명시된 부가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직원에게는 <u>기말수당을 별표6 가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3월, 6월, 9월, 12월 보수지급일에 각 50%씩 지급한다.</u> ② <u>교직원에게는 특별상여수당을 별표6 가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4월, 10월 보수지급일에 50%를 지급하되 4월에 지급되는 특별상여수당은 4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중 3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10월에 지급되는 특별상</u>	제7조(부가수당)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6에 명시된 부가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직원에게는 <u>상여수당을 별표6 가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다만, 징계,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10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u> ② (삭 제)	○ 상여금통합 (기말200%, 특별100%), 수당 감액근거명기

백인표

김명혁

안진환

현행	개정	비고
여수당은 10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중 9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 교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별표6 나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u>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중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u> ④ 교직원에게는 정근수당가산금을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6 다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단, 장기근속 임용자에 한함) ⑤ 교직원에게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교직원에게는 별표6의 라목과 마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2. <u>가족수당과</u>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u>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 및 제11조 6항의 규정은 동일한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교직원이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 박영학원에 2인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u> ⑥ 교직원에게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별표6의 바목 내지 사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⑦ 교직원에게는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 <u>직책급 학사운영비</u>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⑧ 교직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별표6 아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교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별표6 나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u>매월 지급한다. 다만, 전액 이상의 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익월부터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④ 교직원에게는 정근수당가산금을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6 다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단, 장기근속 임용자에 한함) <u>다만, 정계,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10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u> ⑤ 교직원에게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u>다만, 정계,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10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u> 1. 교직원에게는 별표6의 라목과 마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u>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교직원이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 박영학원에 2명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중 1명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u> 2.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⑥ (좌 동) ⑦ 교직원에게는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⑧ 교직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별표6 아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u>다만,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u>	○정근수당변경 (매월 지급), 수당 감액근거 명기 ○수당의 감액 근거 명기 ○수당의 감액 근거 명기 ○단서조항 이동, 가족수당 준용근거삭제 ○학사운영비 삭제 ○단서조항 추가

박연돈 김명혁 이진호

현행	개정	비고
제9조(연구보조비) 교원 및 일반기술직원에게는 별표8의 가, 나목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 ① (삭제) ② 교원에게는 별표8 가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연구보조비를 매월 <u>10일</u>에 지급한다. ③ 일반기술직원에게는 별표8 나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업무연구보조비를 매월 <u>10일</u>에 지급한다. <u><신설></u>	제9조(연구보조비) 교원 및 일반기술직원에게는 별표8의 가, 나목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 ① (삭제) ② 교원에게는 별표8 가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연구보조비를 매월 <u>보수지급일</u>에 지급한다. ③ 일반기술직원에게는 별표8 나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업무연구보조비를 매월 <u>보수지급일</u>에 지급한다. <u>④ 정제,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10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u>	○ 지급일변경 ○ 연구보조비에 대한 감액근거 명기
제10조(복리후생비) 교직원에게는 맞춤형복지비를, <u>기능직 및 고용직에게는 교육훈련비를 별표9의 가, 나목의</u>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u><신설></u>	제10조(복리후생비) ① 교직원에게는 맞춤형복지비를 <u>별표9의 가목의</u>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u>② 기능직에게는 교육훈련비를 별표9의 나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제,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10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u>	○ 고용직 삭제, 항 구분 (복리후생비) ○ 감액근거명기
제11조(보수지급일) 본 대학교의 보수지급일은 별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u>17일</u>로 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1조(보수지급일) 본 대학교의 보수지급일은 별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u>25일</u>로 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지급일변경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 및 보수지급에 따른 세부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복리후생비 지급지침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u>②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전항의 규정으로, 공무원보수지급 관계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준용한다.</u>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 및 보수지급에 따른 세부사항은 <u>정관, 교직원 인사규칙</u>,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복리후생비 지급지침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u>다만,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수당, 연구보조비 및 복리후생비는 제외한다.</u> ② (삭제)	○ 내용수정 및 항 삭제 (준용규정)

박인홍 김명혁 양진환

현행	개정	비고																																		
1. 제6조, 제7조 제2항, 제9조, 제10조 별표9 나목의 보수지급 방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7항을 준용한다. 2. 제8조의 보수지급방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별표 3의 2) 고용직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호 봉</th><th>봉급액</th><th>비고</th></tr> </thead> <tbody> <tr><td>1</td><td>755,100</td><td rowspan="15">고용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11,0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td></tr> <tr><td>2</td><td>788,700</td></tr> <tr><td>3</td><td>822,500</td></tr> <tr><td>4</td><td>854,400</td></tr> <tr><td>5</td><td>886,600</td></tr> <tr><td>6</td><td>912,700</td></tr> <tr><td>7</td><td>939,100</td></tr> <tr><td>8</td><td>962,400</td></tr> <tr><td>9</td><td>986,100</td></tr> <tr><td>10</td><td>1,006,500</td></tr> <tr><td>11</td><td>1,026,700</td></tr> <tr><td>12</td><td>1,044,200</td></tr> <tr><td>13</td><td>1,060,000</td></tr> <tr><td>14</td><td>1,075,100</td></tr> <tr><td>15</td><td>1,089,100</td></tr> </tbody> </table>	호 봉	봉급액	비고	1	755,100	고용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11,0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2	788,700	3	822,500	4	854,400	5	886,600	6	912,700	7	939,100	8	962,400	9	986,100	10	1,006,500	11	1,026,700	12	1,044,200	13	1,060,000	14	1,075,100	15	1,089,100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삭제)	○부칙 신설 ○고용직 삭제 (봉급표)
호 봉	봉급액	비고																																		
1	755,100	고용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11,0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2	788,700																																			
3	822,500																																			
4	854,400																																			
5	886,600																																			
6	912,700																																			
7	939,100																																			
8	962,400																																			
9	986,100																																			
10	1,006,500																																			
11	1,026,700																																			
12	1,044,200																																			
13	1,060,000																																			
14	1,075,100																																			
15	1,089,100																																			

박인홍 김명혁 안진환

현행										개정										비고	
(별표 4) 일반기술직원 정액수당 지급표										(별표 4) 일반기술직원 정액수당 지급표										○수당통합 (일반기술직 정액수당)	
(월지급액, 단위 : 원)										(월지급액, 단위 : 원)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물가수당	244,000	231,000	214,000	201,000	182,000	156,000	127,000	101,000	※보수지급일	직급수당	765,000	752,000	700,000	653,000	598,000	538,000	474,000	414,000	※보수지급일		
조정수당	363,000	363,000	339,000	315,000	290,000	266,000	242,000	218,000	※보수지급일												
(별표 5) 기능직원 정액수당 지급표										(별표 5) 기능직원 정액수당 지급표										○수당통합 (기능직 정액수당) ○기능10급 삭제	
(월지급액, 단위 : 원)										(월지급액, 단위 : 원)											
종별	지급대상		금액		비고						종별	지급대상		금액		비고					
물가수당	기능직원		82,000		※ 보수지급일						직급수당	기능7·8급		395,000		※ 보수지급일					
조정수당	기능7·8급		218,000		※ 보수지급일							기능9급		361,000		※ 보수지급일					
	기능9급		194,000		※ 보수지급일							(삭제)		(삭제)		(삭제)					
	기능10급		167,000		※ 보수지급일																
(별표 5의 2) 고용직원 정액수당 지급표										(별표 5의 2) 고용직원 정액수당 지급표										○고용직 삭제 (정액수당)	
(월지급액, 단위 : 원)										(월지급액, 단위 : 원)											
종별	지급대상		금액		비고						(삭제)										
물가수당	고용직원		67,000		※ 보수지급일																
조정수당	고용직원		79,000		※ 보수지급일																

박연득
김명혁
안진환

현행					개정					비고	
(별표 6) 각종 부가수당 지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별표 6) 각종 부가수당 지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종 별	지급대상	적용 구분		지 급 액	비고	종 별	지급대상	적용 구분	지 급 액	비고	
가. 기말 및 특별상여수당	교 원	봉 급		년 300%	※보수지급일	가. 상여수당	해당자 (교원, 일반·기술·기능직·기 능직원)	봉 급	연 300% (월 25%)	※보수지급일	
	일반·기술·기능· <u>고용직</u> 원	봉급+조정수당		년 300%	※보수지급일						
나. 정근수당	교 원	1년 미만	미지급		※1,7월(2회) ※보수지급일	나. 정근수당	해당자	1년 미만	미지급		※보수지급일
		2년 미만	월봉급의 5%					2년 미만	(월봉급의 10%) / 12		
		3년 미만	월봉급의 10%					3년 미만	(월봉급의 20%) / 12		
		4년 미만	월봉급의 15%					4년 미만	(월봉급의 30%) / 12		
		5년 미만	월봉급의 20%					5년 미만	(월봉급의 40%) / 12		
		6년 미만	월봉급의 25%					6년 미만	(월봉급의 50%) / 12		
		7년 미만	월봉급의 30%					7년 미만	(월봉급의 60%) / 12		
		8년 미만	월봉급의 35%					8년 미만	(월봉급의 70%) / 12		
		9년 미만	월봉급의 40%					9년 미만	(월봉급의 80%) / 12		
		10년 미만	월봉급의 45%					10년 미만	(월봉급의 90%) / 12		
		10년 이상	월봉급의 50%					10년 이상	(월봉급의 100%) / 12		
	일반·기술·기능· <u>고용직</u> 원	1년 미만	월 조정수당액의 50%		※1,7월(2회) ※보수지급일			6년 미만	(월봉급의 50%) / 12		※보수지급일
		2년 미만	월봉급의 5% + 월 조정수당액의 50%					7년 미만	(월봉급의 60%) / 12		
		3년 미만	월봉급의 10% + 월 조정수당액의 50%					8년 미만	(월봉급의 70%) / 12		
		4년 미만	월봉급의 15% + 월 조정수당액의 50%					9년 미만	(월봉급의 80%) / 12		
		5년 미만	월봉급의 20% + 월 조정수당액의 50%					10년 미만	(월봉급의 90%) / 12		
		6년 미만	월봉급의 25% + 월 조정수당액의 50%					10년 이상	(월봉급의 100%) / 12		
		7년 미만	월봉급의 30% + 월 조정수당액의 50%								
		8년 미만	월봉급의 35% + 월 조정수당액의 50%								
		9년 미만	월봉급의 40% + 월 조정수당액의 50%								
		10년 미만	월봉급의 45% + 월 조정수당액의 50%								
		10년 이상	월봉급의 50% + 월 조정수당액의 50%								
○수당통합, 고용직 삭제, 매월 균등지급											
○정근수당변경 (매월 지급), 조정수당통합, 고용직 삭제											

○수당통합,
고용직 삭제,
매월 균등지급

○정근수당변경
(매월 지급),
조정수당통합,
고용직 삭제

백영훈

김명혁

한재현

현행					개정					비고
종 별	지급대상	적용 구분	지 급 액	비고	종 별	지급대상	적용 구분	지 급 액	비고	
라. 가족수당	해당자	배 우 자	월 40,000원	※ 보수지급일	라. 가족수당	해당자	배 우 자	월 40,000원	※ 보수지급일	○ 준용규정 삭제 ○ 고용직 삭제, 지급일변경 ○ 조정수당 삭제 ○ 준용규정 삭제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	※ 보수지급일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0,000원	※ 보수지급일	
		출산 장려 가산금 (3자녀 이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적용)	월 80,000원	※ 보수지급일 2011. 12. 31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장려 가산금 (3자녀 이상)	월 80,000원	※ 보수지급일 2011. 12. 31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바. 정 액 급 식 비	전 교직원 (교원, 일반·기술·기능· <u>고용직원</u>)		월 100,000원	※ 매월 10일	바. 정 액 급 식 비	해당자		월 100,000원	※ 보수지급일	
사. 명 절 휴 가 비	교원	설날, 추석날 : 월 봉급액의 각 60%		※ 해당월	사. 명 절 휴 가 비	해당자	설날, 추석날 : 월 봉급액의 각 60%		※ 해당월	
	일반·기술·기능· <u>고용직원</u>	설날, 추석날 : (월봉급액+월 조정수당)의 각 60%								
아. 육아휴직수 당	해당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1조의3 적용)	월봉급액의 40%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보수지급일	아. 육아휴직수 당	해당자		월봉급액의 40%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보수지급일	

박 선 표

김 명 혁

한 지 원

- 22 -

현행				개정				비고
(별표 7) 직책수당 및 기타수당 지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별표 7) 직책수당 및 기타수당 지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가. 직책수당	종별	지급대상		종별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총장			총장		1,600,000원	○ 직책수당과 학사운영비 통합 ○ 학교비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삭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동래구노인복지관) ○ 직책수당 추가(학과(부)) ○ 직책 삭제 (기능직장, 방호장, 미화반장)
		부총장			부총장		800,000원	
		처장/본부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도서관장/정보전산원장/산학협력단장/평생교육원장/실장			처장/본부장/산학협력단장/실장		600,000원	
		대학원장/단과대학장/도서관장/정보전산원장/평생교육원장			대학원장/단과대학장/도서관장/정보전산원장/평생교육원장		500,000원	
		부처장/사직종합사회복지관장/청소년종합지원센터관장/생활관장/교육연수원장/박물관장/학생상담센터소장/신라한국어교육원장/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국제교육원장/동래구노인복지관장/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부처장		400,000원	
		200,000원			생활관장/교육연수원장/박물관장/학생상담센터소장/신라한국어교육원장/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국제교육원장/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300,000원	
		※ 보수지급일 ※ 2개 이상의 직책을 겸무할 시에는 상위의 직책수당만 지급한다.			팀장		250,000원	
나. 기술업무수당		100,000원			부원장/부학장/부관장/학보사주간/방송국지도교수/공동기기실장/사이버중독치료센터소장/신라리더십센터소장/교육연수부원장/부산학센터소장		175,000원	○ 고용직 삭제 (기타수당)
		기능직장			학과(부)장		75,000원	
		방호장/미화반장			(삭제)			
		30,000원			(삭제)			
		30,000원			기술직원 중 해당자		30,000원	
		전기·전자·건축·토목·환경 직원			기술직원 중 해당자		30,000원	
		※ 보수지급일			기능직원		65,000원	
		30,000원			운전원/전산기사		65,000원	
나. 기술업무수당		기능직원, 고용직원 중 해당자			고용직원		40,000원	○ 보수지급일
		기능직원			운전원		40,000원	
		전기·전자원/미술기사/공예기사/산디기사/냉난방기사			(삭제)			
		20,000원			전기·전자원/미술기사/공예기사/산디기사/냉난방기사		20,000원	
		간호조무원			간호조무원		50,000원	
		50,000원			사서보조원		20,000원	
		20,000원			사서보조원		20,000원	
		20,000원			사서보조원		20,000원	

박연표

김명혁

이진환

현		개		정		비 고	
(별표 9) 복리후생비 지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별표 9) 복리후생비 지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종 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종 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나. 교육훈련비	기능7·8·9급	257,000원	※ 매월 10일	나. 교육훈련비	기능7·8·9급	257,000원	※ 보수지급일
	기능10급	245,000원			(삭 제)	(삭 제)	
	고용직	217,000원			(삭 제)	(삭 제)	
<신 설>				(별표 10) 정액수당(직급수당), 부가수당(상여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구보조비,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감액 지급 구분표			
구분	정직기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 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 할 금액	해당액의 100퍼센트	해당액의 1/3	해당액의 20퍼센트	해당액의 30퍼센트	해당액의 50퍼센트	해당액의 60퍼센트	해당액의 70퍼센트
				◦지급일변경, 기능10급 삭제 고용직 삭제			
				◦보수 감액 지급표 신설			

박영동 김명혁 이진호

연봉제 적용 전임교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4조 (봉급의 지급) 연봉제 교원에게는 별표1(연봉제 교원 봉급표)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봉급을 지급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4조 (봉급의 지급) ① 연봉제 교원에게는 별표1(연봉제 교원 봉급표)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봉급을 지급한다. ② 정직 처분을 받은 자의 봉급은 전액을 감하고, 감봉은 3분의 1을 감하되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직위해제 및 휴직한 교직원에게는 그 사유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정계, 직위해제, 휴직에 대한 봉급의 감액근거 명기 ○ 상여금통합 (기말200%, 특별100%, 명절120%), 수당 감액 근거 명기
제5조 (부가수당) 연봉제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2에 명시된 부가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봉제 교원에게는 기말수당을 별표2 가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3월, 6월, 9월, 12월 보수지급일에 각 50%씩 지급한다. ② 연봉제 교원에게는 특별상여수당을 별표2 가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4월, 10월 보수지급일에 50%를 지급하되 4월에 지급되는 특별상여수당은 4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연봉제 교원 중 3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10월에 지급되는 특별상여수당은 10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연봉제 교원 중 9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 연봉제 교원에게는 정근수당을 별표2 나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연봉제 교원 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연봉제 교원 중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④ 연봉제 교원에게는 정근수당가산금을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2 다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단, 장기근속 임용자에 한함)	제5조 (부가수당) 연봉제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2에 명시된 부가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봉제 교원에게는 상여수당을 별표2 가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다만, 정계,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삭 제) ③ 연봉제 교원에게는 정근수당을 별표2 나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다만, 전체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익월부터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연봉제 교원에게는 정근수당가산금을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2 다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단, 장기근속 임용자에 한함) 다만, 정계, 직위해제	○ 정근수당 변경 (매월 지급), 수당 감액근거 명기 ○ 수당의 감액 근거 명기

06 22 32

현행	개정	비고
⑤ 연봉제 교원에게는 <u>별표2의 라목과 마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u>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u>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교직원이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 박영학원에 2인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⑥ (생 략) ⑦ 연봉제 교원에게는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 <u>직책급 학사운영비</u>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⑧ 연봉제 교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별표2 <u>사목</u>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연구보조비) 연봉제 교원에게는 별표4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연구보조비를 매월 <u>10일</u>에 지급한다. 제8조(복리후생비) 연봉제 교원에게는 맞춤형복지비를 별표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u>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u> ⑤ 연봉제 교원에게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u>다음 각 호에 의하여</u> 지급한다. <u>다만, 징계,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u> 1. 연봉제 교원에게는 <u>별표2의 라목과 마목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교직원이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 박영학원에 2명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중 1명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u> 2. <u>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u> ⑥ (현행과 같음) ⑦ 연봉제 교원에게는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⑧ 연봉제 교원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별표2 <u>인목</u>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u>다만,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u> 제7조(연구보조비) 연봉제 교원에게는 별표4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연구보조비를 매월 <u>보수지급일</u>에 지급한다. <u>다만, 징계,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u> 제8조(복리후생비) 연봉제 교원에게는 맞춤형복지비를 별표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u>다만, 징계,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u>	○수당의 감액 근거 명기 ○수당지급의 기준 명기 (현행기준) ○학사운영비 삭제 ○ 단서조항 추가(현행기준) ○지급일변경 및 연구보조비에 대한 감액근거 명기 ○복리후생비에 대한 감액근거 명기

박성돈 김명혁 오진환

현행	개정	비고
제9조(보수지급일) 본 대학교의 보수지급일은 별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u>17일</u>로 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설> <신설>	제9조(보수지급일) 본 대학교의 보수지급일은 별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u>25일</u>로 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 및 보수지급에 따른 세부사항은 정관, 교직원 인사규칙,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복리후생비 지급지침의 관계 조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수당, 연구보조비 및 복리후생비는 제외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급일변경 ○내용수정 및 항 삭제 (준용규정) ○부칙 신설

백영준

김명혁

안진환

현		행		개		정		비 고			
(별표 2) 각종 부가수당 지급표				(별표 2) 각종 부가수당 지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월지급액, 단위 : 원)							
종 별	지급대상	적용 구분		지 급 액	비고	종 별	지급대상	적용 구분		지 급 액	비고
가. 기말 및 특별상여수당	연봉제 교원	봉 급		년 300%	※보수지급일	가. 상여수당	연봉제 교원	봉 급		연 300% (월 25%)	※보수지급일
나. 정근수당	교원	1년 미만	미지급	※1.7월(2회) ※보수지급일		나. 정근수당	연봉제 교원	1년 미만	미지급	※보수지급일	
		2년 미만	월봉급의 5%					2년 미만	(월봉급의 10%) 1/12		
		3년 미만	월봉급의 10%					3년 미만	(월봉급의 20%) 1/12		
		4년 미만	월봉급의 15%					4년 미만	(월봉급의 30%) 1/12		
		5년 미만	월봉급의 20%					5년 미만	(월봉급의 40%) 1/12		
		6년 미만	월봉급의 25%					6년 미만	(월봉급의 50%) 1/12		
		7년 미만	월봉급의 30%					7년 미만	(월봉급의 60%) 1/12		
		8년 미만	월봉급의 35%					8년 미만	(월봉급의 70%) 1/12		
		9년 미만	월봉급의 40%					9년 미만	(월봉급의 80%) 1/12		
		10년 미만	월봉급의 45%					10년 미만	(월봉급의 90%) 1/12		
		10년 이상	월봉급의 50%					10년 이상	(월봉급의 100%) 1/12		
라. 가족수당	해당자	배우자		월 40,000원	※ 보수지급일	라. 가족수당	해당자	배우자		월 40,000원	※ 보수지급일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	※ 보수지급일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0,000원	※ 보수지급일
		출산 장려 가산금 (3자녀 이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적용)		월 80,000원	※ 보수지급일 2011. 12. 31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장려 가산금 (3자녀 이상)		월 80,000원	※ 보수지급일 2011. 12. 31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바. 정액급식비	연봉제 교원		월 100,000원	※ 매월 10일	바. 정액급식비	연봉제 교원		월 100,000원	※보수지급일		
아. 육아휴직수당	해당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1조의3 적용)		월봉급액의 40%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보수지급일	아. 육아휴직수당	해당자	월봉급액의 40%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보수지급일	
○수당 통합, 매월 균등지급 ○정근수당변경 (매월 지급) ○ 준용규정 삭제 ○ 지급일변경 ○ 준용규정 삭제											

백성돈 김명혁 안진호

현		행		개		정		비 고	
(별표 3) 직책수당 및 기타수당 지급표					(별표 3) 직책수당 및 기타수당 지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월지급액, 단위 : 원)				
종 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종 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가. 직책수당	(신 설)		500,000원	※ 보수지급일 ※ 2개 이상의 직책을 겸무할시에는 상위의 직책수당만 지급한다.	가. 직책수당	총 장		1,600,000원	※ 보수지급일 ※ 2개 이상의 직책을 겸무할시에는 상위의 직책수당만 지급한다.
	(신 설)		400,000원			부 총 장		800,000원	
	처장/ 본부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실장		300,000원			처장/ 본부장 / 산학협력단장/ 실장		600,000원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평생교육원장		500,000원			대학원장/ 본부장		400,000원	
	부처장/ <u>사직종합사회복지관장</u> / <u>청소년종합지원센터관장</u> / 생활관장/ 교육연수원장/ 박물관장/ 학생상담센터소장/ 신라한국어교육원장/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 국제교육원장/ <u>동래구노인복지관장</u> /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200,000원			생활관장/ 교육연수원장/ 박물관장/ 학생상담센터소장/ 신라한국어교육원장/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 국제교육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300,000원	
	부원장/ 부학장/ 부관장/ 학보사주간/ 방송국지도교수/ 공동기기실장/ 사이버중독치료센터소장/ 신라리더십센터소장/ 교육연수부원장/ 부산학센터소장		100,000원			부원장/ 부학장/ 부관장/ 학보사주간/ 방송국지도교수/ 공동기기실장/ 사이버중독치료센터소장/ 신라리더십센터소장/ 교육연수부원장/ 부산학센터소장		175,000원	
					학과(부)장		75,000원		
(별표 4) 연구보조비 지급표					(별표 4) 연구보조비 지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월지급액, 단위 : 원)				
종 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종 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연구보조비	연봉제교원	교 수	913,000원	※ 매월 10일	연구보조비	연봉제교원	교 수	913,000원	※ 보수지급일
		부교수	849,000원				부교수	849,000원	
		조교수 (3년 이상 근속자)	810,000원				조교수 (3년 이상 근속자)	810,000원	
		조교수 (3년 미만 근속자)	767,000원				조교수 (3년 미만 근속자)	767,000원	
○ 지급일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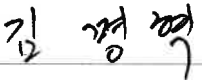
박연홍 김평혁 안진환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별표 6) 정액수당(직급수당), 부가수당(상여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구보조비,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감액 지급 구분표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정직기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th> <th rowspan="2">감봉 기간 중</th> <th colspan="5">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th> </tr> <tr> <th>봉급의 8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th> <th>봉급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th> <th>봉급의 5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th> <th>봉급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th> <th>봉급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th> </tr> <tr> <td>감액 할 금액</td> <td>해당액의 100퍼센트</td> <td>해당액의 1/3</td> <td>해당액의 20퍼센트</td> <td>해당액의 30퍼센트</td> <td>해당액의 50퍼센트</td> <td>해당액의 60퍼센트</td> <td>해당액의 70퍼센트</td> </tr> </table>			구분	정직기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 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 할 금액	해당액의 100퍼센트	해당액의 1/3	해당액의 20퍼센트	해당액의 30퍼센트	해당액의 50퍼센트	해당액의 60퍼센트	해당액의 70퍼센트	○보수 감액 지급표 신설
구분	정직기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 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 할 금액	해당액의 100퍼센트	해당액의 1/3	해당액의 20퍼센트	해당액의 30퍼센트	해당액의 50퍼센트	해당액의 60퍼센트	해당액의 70퍼센트																			

박연홍	김영혁	이진환
-----	-----	-----

조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7조(보수지급일) 본 대학교의 보수지급일은 별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u>17</u>일로 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u><신설></u> (별표 1) 조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table><tr><th>직 급</th><th>봉 급 액</th><th>비 고</th></tr><tr><td>연구조교</td><td><u>1,439,000</u></td><td>보수지급일</td></tr><tr><td>학사조교</td><td><u>1,407,000</u></td><td>보수지급일</td></tr><tr><td>실험조교</td><td><u>961,000</u></td><td>보수지급일</td></tr></table> (별표 2) 조교 수당표 (월지급액, 단위 : 원) <table><tr><th>종 별</th><th>지 급 대 상</th><th>금 액</th><th>비 고</th></tr><tr><td>정액급식비</td><td>연구 · 학사 · 실험조교</td><td>100,000</td><td><u>매월 10일</u></td></tr><tr><td>학사직무수당</td><td>연구 · 학사 · 실험조교</td><td>130,000</td><td><u>매월 10일</u></td></tr><tr><td>명절수당</td><td>연구 · 학사 · 실험조교</td><td>110,000</td><td><u>매월 10일</u></td></tr></table>	직 급	봉 급 액	비 고	연구조교	<u>1,439,000</u>	보수지급일	학사조교	<u>1,407,000</u>	보수지급일	실험조교	<u>961,000</u>	보수지급일	종 별	지 급 대 상	금 액	비 고	정액급식비	연구 · 학사 · 실험조교	100,000	<u>매월 10일</u>	학사직무수당	연구 · 학사 · 실험조교	130,000	<u>매월 10일</u>	명절수당	연구 · 학사 · 실험조교	110,000	<u>매월 10일</u>	제7조(보수지급일) 본 대학교의 보수지급일은 별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u>25</u>일로 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u>부 칙</u>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7조 보수지급일의 변경은 2020년 3월 보수지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table><tr><th>직 급</th><th>봉 급 액</th><th>비 고</th></tr><tr><td>연구조교</td><td><u>1,503,000</u></td><td>※보수지급일</td></tr><tr><td>학사조교</td><td><u>1,459,000</u></td><td>※보수지급일</td></tr><tr><td>실험조교</td><td><u>1,079,000</u></td><td>※보수지급일</td></tr></table> (별표 2) 조교 수당표 (월지급액, 단위 : 원) <table><tr><th>종 별</th><th>지 급 대 상</th><th>금 액</th><th>비 고</th></tr><tr><td>정액급식비</td><td>연구 · 학사 · 실험조교</td><td>100,000</td><td>※보수지급일</td></tr><tr><td>학사직무수당</td><td>연구 · 학사 · 실험조교</td><td>130,000</td><td>※보수지급일</td></tr><tr><td>명절수당</td><td>연구 · 학사 · 실험조교</td><td>110,000</td><td>※보수지급일</td></tr></table>	직 급	봉 급 액	비 고	연구조교	<u>1,503,000</u>	※ 보수지급일	학사조교	<u>1,459,000</u>	※ 보수지급일	실험조교	<u>1,079,000</u>	※ 보수지급일	종 별	지 급 대 상	금 액	비 고	정액급식비	연구 · 학사 · 실험조교	100,000	※ 보수지급일	학사직무수당	연구 · 학사 · 실험조교	130,000	※ 보수지급일	명절수당	연구 · 학사 · 실험조교	110,000	※ 보수지급일	○ 보수지급일 변경 (17일 → 25일) ○ 부칙 신설 ○ 조교 본봉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 - 실험조교도 30시간 충족) ○ 보수지급일 변경
직 급	봉 급 액	비 고																																																								
연구조교	<u>1,439,000</u>	보수지급일																																																								
학사조교	<u>1,407,000</u>	보수지급일																																																								
실험조교	<u>961,000</u>	보수지급일																																																								
종 별	지 급 대 상	금 액	비 고																																																							
정액급식비	연구 · 학사 · 실험조교	100,000	<u>매월 10일</u>																																																							
학사직무수당	연구 · 학사 · 실험조교	130,000	<u>매월 10일</u>																																																							
명절수당	연구 · 학사 · 실험조교	110,000	<u>매월 10일</u>																																																							
직 급	봉 급 액	비 고																																																								
연구조교	<u>1,503,000</u>	※ 보수지급일																																																								
학사조교	<u>1,459,000</u>	※ 보수지급일																																																								
실험조교	<u>1,079,000</u>	※ 보수지급일																																																								
종 별	지 급 대 상	금 액	비 고																																																							
정액급식비	연구 · 학사 · 실험조교	100,000	※ 보수지급일																																																							
학사직무수당	연구 · 학사 · 실험조교	130,000	※ 보수지급일																																																							
명절수당	연구 · 학사 · 실험조교	110,000	※ 보수지급일																																																							

		
---	--	---

- 32 -

【 별첨 3 】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시설 포함)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회계기간 : 2019.01.01.~2019.12.31.(어린이집 2019.03.01.~2020.02.29.)

(단위:천 원)

구분	세입					세출				
	관	2019년 1차 추경예산(A)	2019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률 (%)	관	2019년 1차 추경예산(A)	2019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률 (%)
① 사직 종합 사회 복지관	사업수입	316,293	325,325	9,032	2.9%	사무비	865,493	867,020	1,527	0.2%
	보조금수입	2,223,953	2,471,483	247,530	11.1%	재산조성비	45,741	32,741	-13,000	-28.4%
	후원금수입	189,867	233,147	43,280	22.8%	사업비	1,939,492	2,147,007	207,515	10.7%
	전입금	33,700	22,273	-11,427	-33.9%	잡지출	3,000	2,300	-700	-23.3%
	이월금	146,230	146,230	0	0.0%	예비비및기타	60,977	154,853	93,876	154.0%
	접수입	4,660	5,463	803	17.2%					
	소 계	2,914,703	3,203,921	289,218	9.9%	소 계	2,914,703	3,203,921	289,218	9.9%
②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사업수입	28,300	27,070	-1,230	-4.3%	사무비	164,126	161,427	-2,699	-1.6%
	보조금수입	147,223	146,438	-785	-0.5%	재산조성비	5,000	4,083	-917	-18.3%
	후원금수입	6,940	11,840	4,900	70.6%	사업비	23,668	27,038	3,370	14.2%
	이월금	45,469	45,469	0	0.0%	예비비및기타	36,248	40,467	4,219	11.6%
	접수입	1,110	2,198	1,088	98.0%					
	소 계	229,042	233,015	3,973	1.7%	소 계	229,042	233,015	3,973	1.7%
③ 노인 복지 센터	보조금수입	132,038	134,038	2,000	1.5%	사무비	133,746	129,132	-4,614	-3.4%
	후원금수입	7,141	17,838	10,697	149.8%	재산조성비	3,000	13,460	10,460	348.7%
	이월금	44,672	44,672	0	0.0%	사업비	32,230	32,740	510	1.6%
	접수입	2,110	3,315	1,205	57.1%	잡지출	100	100	0	0.0%
	소 계	185,961	199,863	13,902	7.5%	예비비및기타	16,885	24,431	7,546	44.7%
④ 신라대 사직사회 서비스 센터	사업수입	124,812	107,202	-17,610	-14.1%	사무비	89,212	70,997	-18,215	-20.4%
	이월금	32,060	32,060	0	0.0%	재산조성비	3,000	1,200	-1,800	-60.0%
	접수입	20	20	0	0.0%	사업비	34,200	28,835	-5,365	-15.7%
	소 계	156,892	139,282	-17,610	-11.2%	예비비및기타	30,480	38,250	7,770	25.5%
	소 계	156,892	139,282	-17,610	-11.2%	소 계	156,892	139,282	-17,610	-11.2%
⑤ 동래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사업수입	1,569,970	1,491,576	-78,394	-5.0%	사무비	239,584	240,455	871	0.4%
	보조금수입	1,718,515	1,113,675	-604,840	-35.2%	재산조성비	16,783	29,215	12,432	74.1%
	후원금수입	19,140	34,940	15,800	82.5%	사업비	2,467,820	2,201,649	-266,171	-10.8%
	이월금	26,854	26,854	0	0.0%	예비비및기타	617,799	204,838	-412,961	-66.8%
	접수입	7,507	9,112	1,605	21.4%					
	소 계	3,341,986	2,676,157	-665,829	-19.9%	소 계	3,341,986	2,676,157	-665,829	-19.9%
⑥ 신라 직업 재활 시설	입소자부담금	8,500	7,780	-720	-8.5%	사무비	234,708	232,563	-2,145	-0.9%
	사업수입	34,888	45,444	10,556	30.3%	재산조성비	24,170	23,970	-200	-0.8%
	보조금수입	241,609	240,300	-1,309	-0.5%	사업비	78,998	80,363	1,365	1.7%
	후원금수입	24,520	21,480	-3,040	-12.4%	예비비및기타	3,714	13,531	9,817	264.3%
	전입금	3,000	3,000	0	0.0%					
	이월금	19,125	19,125	0	0.0%					
	접수입	9,948	13,298	3,350	33.7%					
	소 계	341,590	350,427	8,837	2.6%	소 계	341,590	350,427	8,837	2.6%
⑦ 사직 복지관 어린이집	보육료	142,216	140,336	-1,880	-1.3%	인건비	243,901	246,279	2,378	1.0%
	수익자부담수입	28,489	27,059	-1,430	-5.0%	운영비	37,800	36,800	-1,000	-2.6%
	보조금및지원금	169,617	171,148	1,531	0.9%	보육활동비	48,486	48,392	-94	-0.2%
	전입금	2,640	2,640	0	0.0%	수익자부담경비	29,885	28,579	-1,306	-4.4%
	과년도수입	140	140	0	0.0%	반환금	1,104	626	-478	-43.3%
	접수입	4,612	5,091	479	10.4%	재산조성비	12,000	11,200	-800	-6.7%
	전년도이월액	31,962	31,962	0	0.0%	잡지출	500	500	0	0.0%
	소 계	379,676	378,376	-1,300	-0.3%	예비비	6,000	6,000	0	0.0%
	소 계	379,676	378,376	-1,300	-0.3%	소 계	379,676	378,376	-1,300	-0.3%
합 계		7,549,850	7,181,041	-368,809	-4.9%	합 계	7,549,850	7,181,041	-368,809	-4.9%

박영훈 김병혁 박진환

【 별첨 4 】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시설 포함) 2020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회계기간 : 2020.01.01.~2020.12.31.(어린이집 2020.03.01.~2021.02.28.)

(단위:천 원)

구분	세 입					세 출				
	관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증감률 (%)	관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증감률 (%)
① 사직 종합 복지관	사업수입	325,325	318,949	-6,376	-2.0%	사 무 비	867,020	886,262	19,242	2.2%
	보조금수입	2,471,483	2,972,936	501,453	20.3%	재산조성비	32,741	22,741	-10,000	-30.5%
	후원금수입	233,147	144,160	-88,987	-38.2%	사 업 비	2,147,007	2,661,943	514,936	24.0%
	전 입 금	22,273	22,000	-273	-1.2%	잡 지 출	2,300	2,300	0	0.0%
	이 월 금	146,230	148,101	1,871	1.3%	예비비및기타	154,853	39,060	-115,793	-74.8%
	잡 수 입	5,463	6,160	697	12.8%					
	소 계	3,203,921	3,612,306	408,385	12.7%	소 계	3,203,921	3,612,306	408,385	12.7%
②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사업수입	27,070	26,920	-150	-0.6%	사 무 비	161,427	132,157	-29,270	-18.1%
	보조금수입	146,438	117,975	-28,463	-19.4%	재산조성비	4,083	1,060	-3,023	-74.0%
	후원금수입	11,840	6,850	-4,990	-42.1%	사 업 비	27,038	27,290	252	0.9%
	이 월 금	45,469	40,457	-5,012	-11.0%	예비비및기타	40,467	33,805	-6,662	-16.5%
	잡 수 입	2,198	2,110	-88	-4.0%					
	소 계	233,015	194,312	-38,703	-16.6%	소 계	233,015	194,312	-38,703	-16.6%
③ 노인 복지 센터	보조금수입	134,038	944,700	810,662	604.8%	사 무 비	129,132	135,222	6,090	4.7%
	후원금수입	17,838	6,200	-11,638	-65.2%	재산조성비	13,460	600	-12,860	-95.5%
	이 월 금	44,672	20,152	-24,520	-54.9%	사 업 비	32,740	837,418	804,678	2457.8%
	전 입 금	-	100	100	100.0%	잡 지 출	100	100	0	0.0%
	잡 수 입	3,315	4,210	895	27.0%	예비비및기타	24,431	2,022	-22,409	-91.7%
	소 계	199,863	975,362	775,499	388.0%	소 계	199,863	975,362	775,499	388.0%
④ 신라대 사직 사회 서비스 센터	사업수입	107,202	104,412	-2,790	-2.6%	사 무 비	70,997	80,971	9,974	14.0%
	이 월 금	32,060	38,287	6,227	19.4%	재산조성비	1,200	3,000	1,800	150.0%
	잡 수 입	20	20	0	0.0%	사 업 비	28,835	39,800	10,965	38.0%
	소 계	139,282	142,719	3,437	2.5%	예비비및기타	38,250	18,948	-19,302	-50.5%
						소 계	139,282	142,719	3,437	2.5%
⑤ 동래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사업수입	1,491,576	2,187,245	695,669	46.6%	사 무 비	240,455	257,607	17,152	7.1%
	보조금수입	1,113,675	1,256,299	142,624	12.8%	재산조성비	29,215	7,000	-22,215	-76.0%
	후원금수입	34,940	16,740	-18,200	-52.1%	사 업 비	2,201,649	3,205,517	1,003,868	45.6%
	이 월 금	26,854	201,889	175,035	651.8%	예비비및기타	204,838	199,067	-5,771	-2.8%
	잡 수 입	9,112	7,018	-2,094	-23.0%					
	소 계	2,676,157	3,669,191	993,034	37.1%	소 계	2,676,157	3,669,191	993,034	37.1%
⑥ 신라 직업 재활 시설	입소자부담금	7,780	7,780	0	0.0%	사 무 비	232,563	241,518	8,955	3.9%
	사업수입	45,444	49,200	3,756	8.3%	재산조성비	23,970	5,639	-18,331	-76.5%
	보조금수입	240,300	243,311	3,011	1.3%	사 업 비	80,363	77,159	-3,204	-4.0%
	후원금수입	21,480	4,300	-17,180	-80.0%	예비비및기타	13,531	8,455	-5,076	-37.5%
	전 입 금	3,000	3,000	0	0.0%					
	이 월 금	19,125	16,160	-2,965	-15.5%					
	잡 수 입	13,298	9,020	-4,278	-32.2%					
	소 계	350,427	332,771	-17,656	-5.0%	소 계	350,427	332,771	-17,656	-5.0%
⑦ 사직 복지관 어린이집	보 육 료	140,336	148,904	8,568	6.1%	인 건 비	246,279	267,042	20,763	8.4%
	수익자부담수입	27,059	27,059	0	0.0%	운 영 비	36,800	36,800	0	0.0%
	보조금및지원금	171,148	187,679	16,531	9.7%	보육활동비	48,392	50,922	2,530	5.2%
	전입금	2,640	2,640	0	0.0%	수익자부담경비	28,579	28,579	0	0.0%
	과년도수입	140	140	0	0.0%	반 환 금	626	0	-626	-100.0%
	잡 수 입	5,091	2,421	-2,670	-52.4%	재산조성비	11,200	12,000	800	7.1%
	전년도이월액	31,962	33,000	1,038	3.2%	잡 지 출	500	500	0	0.0%
	소 계	378,376	401,843	23,467	6.2%	예 비 비	6,000	6,000	0	0.0%
						소 계	378,376	401,843	23,467	6.2%
합 계		7,181,041	9,328,504	2,147,463	29.9%	합 계	7,181,041	9,328,504	2,147,463	29.9%

백성훈 김명혁 안진호

【 별첨 5 】 동래구노인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구분	세 입					세 출				
	관	2019년 1차 추경예산(A)	2019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률 (%)	관	2019년 1차 추경예산(A)	2019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률 (%)
① 동래구 노인 복지관	사업수입	137,460	123,100	-14,360	-10.4%	사 무 비	573,715	562,649	-11,066	-1.9%
	보조금수입	2,549,234	2,759,394	210,160	8.2%	재산조성비	16,000	16,000	0	0.0%
	후원금수입	66,659	61,660	-4,999	-7.5%	사 업 비	2,258,827	2,381,510	122,683	5.4%
	전 입 금	50,000	50,000	0	0.0%	잡 지 출	1,000	1,000	0	0.0%
	이 월 금	112,134	112,134	0	0.0%	예 비 비	71,910	149,544	77,634	108.0%
	잡 수 입	6,700	5,150	-1,550	-23.1%	반 환 금	735	735	0	0.0%
	소 계	2,922,187	3,111,438	189,251	6.5%	소 계	2,922,187	3,111,438	189,251	6.5%
② 노인 복지 센터	입소자수입	32,952	36,216	3,264	9.9%	사 무 비	266,933	267,570	637	0.2%
	사업수입	338,840	325,520	-13,320	-3.9%	재산조성비	20,000	4,500	-15,500	-77.5%
	보조금수입	0	1,422	1,422	100%	사 업 비	52,570	32,200	-20,370	-38.7%
	이 월 금	120,217	120,217	0	0.0%	전 출 금	55,000	55,000	0	0.0%
	잡 수 입	12,720	6,620	-6,100	-48.0%	예 비 비	110,226	130,725	20,499	18.6%
	소 계	504,729	489,995	-14,734	-2.9%	소 계	504,729	489,995	-14,734	-2.9%
③ 사회 서비스 센터	사업수입	167,340	151,000	-16,340	-9.8%	사 업 비	219,084	204,196	-14,888	-6.8%
	이 월 금	42,394	42,394	0	0.0%					
	잡 수 입	9,350	10,802	1,452	15.5%					
	소 계	219,084	204,196	-14,888	-6.8%	소 계	219,084	204,196	-14,888	-6.8%
④ 재가노인 서비스 센터	보조금수입	131,612	131,612	0	0.0%	사 무 비	111,596	109,571	-2,025	-1.8%
	후원금수입	2,000	2,000	0	0.0%	사 업 비	30,068	29,800	-268	-0.9%
	전입금	5,000	5,000	0	0.0%	잡 지 출	150	150	0	0.0%
	이월금	18,771	18,771	0	0.0%	예 비 비	151	2,444	2,293	1518.5%
	잡 수 입	50	50	0	0.0%	반 환 금	15,468	15,468	0	0.0%
	소 계	157,433	157,433	0	0.0%	소 계	157,433	157,433	0	0.0%
합 계		3,803,433	3,963,062	159,629	4.2%	합 계	3,803,433	3,963,062	159,629	4.2%

【 별첨 6 】 동래구노인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0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구분	세 입					세 출				
	관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증감률 (%)	관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증감률 (%)
① 동래구 노인 복지관	사업수입	123,100	123,100	0	0.0%	사 무 비	562,649	586,282	23,633	4.2%
	보조금수입	2,759,394	2,996,067	236,673	8.6%	재산조성비	16,000	16,000	0	0.0%
	후원금수입	61,660	48,118	-13,542	-22.0%	사 업 비	2,381,510	2,667,852	286,342	12.0%
	전 입 금	50,000	50,000	0	0.0%	잡 지 출	1,000	1,000	0	0.0%
	이 월 금	112,134	149,544	37,410	33.4%	예 비 비	149,544	20,489	-129,055	-86.3%
	잡 수 입	5,150	5,150	0	0.0%	반 환 금	735	80,356	79,621	10832.8%
	소 계	3,111,438	3,371,979	260,541	8.4%	소 계	3,111,438	3,371,979	260,541	8.4%
② 노인 복지 센터	입소자수입	36,216	36,216	0	0.0%	사 무 비	267,570	259,848	-7,722	-2.9%
	사업수입	325,520	323,520	-2,000	-0.6%	재산조성비	4,500	35,000	30,500	677.8%
	보조금수입	1,422	0	-1,422	-100.0%	사 업 비	32,200	36,720	4,520	14.0%
	이 월 금	120,217	130,725	10,508	8.7%	전 출 금	55,000	60,000	5,000	9.1%
	잡 수 입	6,620	2,500	-4,120	-62.2%	예 비 비	130,725	101,393	-29,332	-22.4%
	소 계	489,995	492,961	2,966	0.6%	소 계	489,995	492,961	2,966	0.6%
③ 사회 서비스 센터	사업수입	151,000	13,200	-137,800	-91.3%	사 업 비	204,196	67,216	-136,980	-67.1%
	이 월 금	42,394	52,362	9,968	23.5%					
	잡 수 입	10,802	1,654	-9,148	-84.7%					
	소 계	204,196	67,216	-136,980	-67.1%	소 계	204,196	67,216	-136,980	-67.1%
④ 재가노인 서비스 센터	보조금수입	131,612	131,612	0	0.0%	사무비	109,571	116,425	6,854	6.3%
	후원금수입	2,000	2,000	0	0.0%	사업비	29,800	25,801	-3,999	-13.4%
	전입금	5,000	10,000	5,000	100.0%	잡지출	150	150	0	0.0%
	이월금	18,771	2,072	-16,699	-89.0%	예 비 비	2,444	3,358	914	37.4%
	잡 수 입	50	50	0	0.0%	반 환 금	15,468	0	-15,468	-100.0%
	소 계	157,433	145,734	-11,699	-7.4%	소 계	157,433	145,734	-11,699	-7.4%
합 계		3,963,062	4,077,890	114,828	2.9%	합 계	3,963,062	4,077,890	114,828	2.9%

백성봉 김명혁 안지환

【 별첨 7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 회계기간 : 2019.01.01. ~ 2019.12.31.

(단위:천 원)

구분	세입					세출				
	관	2019년 1차 추경예산(A)	2019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률 (%)	관	2019년 1차 추경예산(A)	2019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률 (%)
① 학교 폭력 예방 회복 조정 센터	보조금	505,000	505,000	0	0.00%	학교폭력 예방사업	505,000	505,000	0	0.00%
	특화사업	20,000	20,000	0	0.00%	특화사업	20,000	20,000	0	0.00%
	공모사업	91,210	91,210	0	0.00%	공모사업	91,210	91,210	0	0.00%
	수익사업	9,550	9,100	-450	-4.71%	수익사업	17,114	16,664	-450	-2.63%
	이월금	7,564	7,564	0	0.00%					
	소 계	633,324	632,874	-450	-0.07%	소 계	633,324	632,874	-450	-0.07%
②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보조금	350,217	351,425	1,208	0.34%	사무비	288,217	288,217	0	0.00%
	공모사업	12,000	16,200	4,200	35.00%	사업비	62,000	63,208	1,208	1.95%
	수익사업	500	500	0	0.00%	공모사업	12,000	16,200	4,200	35.00%
	이월금	583	583	0	0.00%	수익사업	1,083	1,083	0	0.00%
	소 계	363,300	368,708	5,408	1.49%	소 계	363,300	368,708	5,408	1.49%
③ 남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보조금	214,899	217,315	2,416	1.12%	사무비	177,173	177,173	0	0.00%
	공모사업	0	13,000	13,000		사업비	37,726	40,142	2,416	6.40%
	수익사업	500	600	100	20.00%	공모사업	0	13,000	13,000	100.00%
	이월금	199	199	0	0.00%	수익사업	699	799	100	14.31%
	소 계	215,598	231,114	15,516	7.20%	소 계	215,598	231,114	15,516	7.20%
④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보조금	394,311	395,519	1,208	0.31%	사무비	339,219	339,219	0	0.00%
	수익사업	1,300	1,400	100	7.69%	사업비	55,092	56,300	1,208	2.19%
	이월금	204	204	0	0.00%	수익사업	1,504	1,604	100	6.65%
	소 계	395,815	397,123	1,308	0.33%	소 계	395,815	397,123	1,308	0.33%
⑤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보조금	343,072	344,280	1,208	0.35%	사무비	281,620	281,620	0	0.00%
	수익사업	1,000	1,000	0	0.00%	사업비	61,452	62,660	1,208	1.97%
	이월금	190	190	0	0.00%	수익사업	1,190	1,190	0	0.00%
	소 계	344,262	345,470	1,208	0.35%	소 계	344,262	345,470	1,208	0.35%
⑥ 청소년 성문화 센터	보조금	150,586	150,586	0	0.00%	청소년성문 화센터운영	150,586	150,586	0	0.00%
	수익사업	14,524	14,524	0	0.00%	수익사업	19,768	19,768	0	0.00%
	이월금	5,244	5,244	0	0.00%					
	소 계	170,354	170,354	0	0.00%	소 계	170,354	170,354	0	0.00%
합 계		2,122,653	2,145,643	22,990	1.08%	합 계	2,122,653	2,145,643	22,990	1.08%

백 연표 김 병혁 안 진 호

【 별첨 8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20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회계기간 : 2020.01.01.~2020.12.31.

(단위:천 원)

구분	세 입					세 출				
	관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증감률 (%)	관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증감률 (%)
① 학교폭력 예방·복 조정 센터	보조금	505,000	516,436	11,436	2.26%	학교폭력 예방사업	505,000	516,436	11,436	2.26%
	특화사업	20,000	20,000	0	0.00%	특화사업	20,000	20,000	0	0.00%
	공모사업	91,210	92,345	1,135	1.24%	공모사업	91,210	92,345	1,135	1.24%
	수익사업	9,100	9,100	0	0.00%	수익사업	16,664	9,100	-7,564	-45.39%
	이월금	7,564	0	-7,564	-100.00%					
	소 계	632,874	637,881	5,007	0.79%	소 계	632,874	637,881	5,007	0.79%
②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보조금	351,425	416,276	64,851	18.45%	사무비	288,217	338,676	50,459	17.51%
	공모사업	16,200	0	-16,200	-100.00%	사업비	63,208	77,600	14,392	22.77%
	수익사업	500	600	100	20.00%	공모사업	16,200	0	-16,200	-100.00%
	이월금	583	0	-583	-100.00%	수익사업	1,083	600	-483	-44.60%
	소 계	368,708	416,876	48,168	13.06%	소 계	368,708	416,876	48,168	13.06%
③ 남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보조금	217,315	289,523	72,208	33.23%	사무비	177,173	244,843	67,670	38.19%
	공모사업	13,000	0	-13,000	-100.00%	사업비	40,142	44,680	4,538	11.30%
	수익사업	600	400	-200	-33.33%	수익사업	13,000	400	-12,600	-96.92%
	이월금	199	0	-199	-100.00%	공모사업	799	0	-799	-100.00%
	소 계	231,114	289,923	58,809	25.45%	소 계	231,114	289,923	58,809	25.45%
④ 일시 청소년 쉼터 (고정형)	보조금	395,519	472,020	76,501	19.34%	사무비	339,219	400,668	61,449	18.11%
	수익사업	1,400	1,400	0	0.00%	사업비	56,300	71,352	15,052	26.74%
	이월금	204	0	-204	-100.00%	수익사업	1,604	1,400	-204	-12.72%
	소 계	397,123	473,420	76,297	19.21%	소 계	397,123	473,420	76,297	19.21%
⑤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보조금	344,280	402,470	58,190	16.90%	사무비	281,620	328,248	46,628	16.56%
	수익사업	1,000	1,000	0	0.00%	사업비	62,660	74,222	11,562	18.45%
	이월금	190	0	-190	-100.00%	수익사업	1,190	1,000	-190	-15.97%
	소 계	345,470	403,470	58,000	16.79%	소 계	345,470	403,470	58,000	16.79%
⑥ 청소년 성문화 센터	보조금	150,586	157,052	6,466	4.29%	청소년성 문화센터운영	150,586	157,052	6,466	4.29%
	수익사업	14,524	32,400	17,876	123.08%	수익사업	19,768	32,400	12,632	63.90%
	이월금	5,244	0	-5,244	-100.00%					
	소 계	170,354	189,452	19,098	11.21%	소 계	170,354	189,452	19,098	11.21%
합 계		2,145,643	2,411,022	265,379	12.37%	합 계	2,145,643	2,411,022	265,379	12.37%

박 인 동 김 병 령 안 진 환

【 별첨 9 】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회계기간 : 2019.01.01.~2019.12.31.

(단위:천 원)

구분	세 입					세 출				
	관	2019년 1차 추경예산(A)	2019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률 (%)	관	2019년 1차 추경예산(A)	2019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률 (%)
강서구 진로 교육 지원 센터	보조금수입	250,000	250,000	0	0.0%	사무비	136,749	125,544	-11,205	-8.2%
	접수입	20	14	-6	-30.0%	사업비	113,251	124,456	11,205	9.9%
	이월금	3	3	0	0.0%	이월금	20	14	-6	-30.0%
						반환금	3	3	0	0.0%
합 계		250,023	250,017	-6	0.0%	합계	250,023	250,017	-6	0.0%

【 별첨 10 】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20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회계기간 : 2020.01.01.~2020.12.31.

(단위:천 원)

구분	세 입					세 출				
	관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증감률 (%)	관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증감률 (%)
강서구 진로 교육 지원 센터	보조금수입	250,000	270,000	20,000	8.0%	사무비	125,544	147,822	22,278	17.7%
	접수입	14	30	16	114.3%	사업비	124,456	122,178	-2,278	-1.8%
	이월금	3	14	11	366.7%	이월금	14	30	16	114.3%
						반환금	3	14	11	366.7%
합 계		250,017	270,044	20,027	8.0%	합계	250,017	270,044	20,027	8.0%

【 별첨 11 】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회계기간 : 2019.01.01.~2019.12.31.

(단위:천 원)

구분	세 입					세 출				
	관	2019년 1차 추경예산(A)	2019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률 (%)	관	2019년 1차 추경예산(A)	2019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률 (%)
동래구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사업수입	125,584	121,870	-3,714	-2.96%	사 무 비	399,140	400,040	900	0.23%
	보조금수입	700,336	912,108	211,772	30.24%	재산조성비	118,000	268,000	150,000	127.12%
	후원금수입	20	20	0	0.00%	사 업 비	345,700	402,800	57,100	16.52%
	이 월 금	40,927	40,927	0	0.00%	잡 지 출	100	100	0	0.00%
	접 수 입	133	75	-58	-43.61%	예비비및기타	4,060	4,060	0	0.00%
합 계		867,000	1,075,000	208,000	23.99%	합 계	867,000	1,075,000	208,000	23.99%

백 연표 김 병 역 오 진 환

정 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3장 기관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5조의3 (평의위원회의 구성) ①평의위원회는 <u>교원·직원</u>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u>5</u>명 2. 직원 2명 <u><신설></u> 3. 학생 2명 4.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대학의 교직원이 아닌 자)2명	제3장 기관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5조의3 (평의위원회의 구성) ①평의위원회는 <u>교원, 직원, 조교</u>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u>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u>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u>4</u>명 2. 직원 2명 3. <u>조교 1명</u> 4. 학생 2명 5.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대학의 교직원이 아닌 자) 2명	고등교육법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05.29 대학평의위원회 구성단위 변경 (교원 1명 감원, 조교 1명 증원)
<u><신 설></u>	<u>부 칙 (2019. 12. 24. 제439차 이사회 의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u>	시행일

백인표	김명백	안지환
-----	-----	-----